

제 834 호

1981. 4.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서 보

차 례

◎ 조례

제 1505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3
제 1506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8

◎ 규칙

제 229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 도입심의위원회규칙	8
--	---

◎ 훈령

제 546 호 : 서울특별시 시민 복지기탁금 관리 규정 중개정 규정	10
---------------------------------------	----

◎ 고시

제 116 호 : 도시계획변경 (도로) 결정 고시	11
제 117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 분계획 인가	12
제 118 호 : 도시계획사업 (전기 공급설비) 시행허가	1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19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용사, 도로) 결정 (지적승인포함)	
	및 변경	14
제 12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천) 결정 및 변경 파지적승인	15
제 121 호 :	민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6
제 122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17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18
제 12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추가)	18
제 12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지적승인	20
제 126 호 :	소매상의 연쇄화사업대장규모변경고시	20
제 127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21
제 128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지구) 지적승인	22
제 129 호 :	도시계획시설 () 지적승인	22
제 130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지적승인	23

◎ 공 고

제 100 호 :	서울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24
제 101 호 :	서울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24
제 10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5
제 10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6
제 104 호 :	환경계획 변경인가 및 환경예정지변경지정공고	30
제 105 호 :	환경계획변경인가 및 환경예정지변경지정공고	31
제 106 호 :	K 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31
제 107 호 :	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행정처분	32
제 10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32
제 109 호 :	도시계획사업 (구토공단종합복지관) 실시계획 공람공고	33
제 111 호 :	K S 표시경지처분공고	36
제 113 호 :	건설업 (조경식재 및 시설물단종공사업) 면허취소 공고	36

◎ 사 력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05 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입장료등의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조성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공원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시장이 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비행정청의 공원조성자격) 시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원조성능력 있는자
2. 공원조성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공원조성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5 조 (공원입장료등) ① 공원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공원에 한한다.

제 6 조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 7 조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

38-4 제 834 호 시

보 1891.4.15

이의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한다.	출입하는 자
제 8조 (공원점용료) 공원점용료는 (별표4)와 같이 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제 9조 (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공원 입장료는 입장시, 공원시설 사용료 는 시설이용시, 공원점용료는 점용 허가시에 징수한다. ②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의 관리위탁료의 징수는 그 성질 에 따라 연액, 월액등의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된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공원관리청이 주관 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 여 출입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 허가면적보다 과소하여 이의 환 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영구히 전할 사적 또는 현저 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 치하는 경우 2. 민족적의식 및 종교의식등 이 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점용 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 10조 (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 11조 (관리위탁등의 기간) 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원점용 허 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 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 위안에서 이를 원활할 수 있다. ②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 만료후 재속 관리 및 점용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 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 자 2. 만 6세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의 자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구역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제 12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834 호 시

보 1891.4.15 38-5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 조(전대등의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재반전능은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원상회복) 시장은 법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5 조(수수료) ① 법 및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별표 5)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491호, 67.11.22)는 이를 폐지한다.
-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권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공원으로 본다.

<별표 1>

공원 입장료

종 류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일 반 공 원	대인 1회당	100원	○ 단체는 기본요율의 30% 범위내에서 시장이 임하 조정할 수 있음.
	소인 1회당	60원	○ 조기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
어린이대공원	대인 1회당	300 원	
	소인 1회당	100 원	

주) 어린이 : 국민학교 학생 및 만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소인) (다만, 유희 및 운동시설사용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자)
 학 생 : 정복을 착용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의 학생
 어 룬 : 어린이, 학생, 군인 및 만 6세이하의 자 이외의 자
 대 인 : 어른 및 학생
 단 체 :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함.

38-6 제 834 호 시

보 1981.4.15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용	1 회당	평당 10원	
상시 역리행위 (사진촬영)	1인 1년당	100,000원	
영화촬영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의 2배로 함
녹화	1시간	10,000원	
	초파시간당	5,000원	
야외음악당 사용	주간 1회당	30,000원	야간은 주간의 2배로 함
남산공원	어른 1회당	150원	
식물원 입장	학생 1회당	100원	
	어린이 1회당	50원	
남산공원 (1회통과당)			
차량 입장	버스·대형화물 승용·마이크로 버스·소형화물	600원 400원 200원	
남산전망대 입장	대인 1회당 소인 1회당	1,000원 700원	
남산케이블카	대인 편도 소인 편도	500원 300원	○ 왕복은 편도의 50% 가산 ○ 단체는 해당액의 30% 범위 내에서 인하함.
봉근의 경우 1개월당		3,000원	
유회시설 운동시설		인근시설 사용 료의 90% 이내 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 어린이수영장은 관리운영비 범위내에서 정함.

제334호 시 보 1981.4.15 38-1

<별표3> 공원 시설의 관리 위탁료

종 려	단위기준	금 액
운동시설 위탁료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영업 목적 이외	당해제 산가액의 1/100
유화시설 위탁료	-	전체수입액의 10/100
기타시설 위탁료	년 액	인근임대료주정액의 100/100

<별표4> 공원 점용료

점용 대상	점 용 료
전기통신설비.도로.교량.철도.궤도。 노의주차장 및 이와 유사시설설치점용	인근 토지 가격의 6/100
수도관. 하수도관, 개스관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	인근 토지가격의 1/100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시설설치점용	인근 토지가격의 6/100 를 일별로 산정
행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 사한 점용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 를 제외한 금액의 70/100

<별표5> 수수료

구 分	단위기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 미만	3,000 원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200 이상	5,000 원	수입증지로 납부함.
	300 회 이상	10,000 원	
점용허가신청	"	5,000 원	

38-8 제 834 호 시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4. 1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 창갑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06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영"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수입증지로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부등록에 있어서는 6,000 원

2.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2,000 원

3. 영제 11 조에 의한 등록의 경우는 영제 12 조제 1 항 각호에 정한 수수료

제 3 조 (반환금지) 등록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는 파오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보 1981. 4. 15.

부 칙 (8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 도입 심의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 4.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 창갑

◎ 교육규칙 제 229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
도입 심의위원회 규칙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본청"이라 한다)와 그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외국산 기자재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구매, 도입, 임차등(국내구매 및 임차를 포함하여 이하 "도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제 2 조 (수요기관) 다음 기관이 외국산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구매 또는 구매요청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본청 및 사업소	위원장 1인과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2. 교육구청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3. 국·공립 각급학교	1. 학무국장
4. 외국차관, 국고 및 시비조 대상인 사립학교(차관, 국고, 시비 로 도입되는 기자재에 한 한다)	2. 관리국장
제3조 (사전경토) 수요기관이 외국산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며,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요청서에 그 심의결과를 첨부하 여 요청 한다.	3. 초등교육과장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중등교육과장
1. 기자재 구매의 필요성 및 타당성	5. 실업교육과장
2. 구매의 규모 및 품목별 적합성	6. 재무과장
3. 타기관보유 기자재 전용, 공동사용 가능여부 및 국신품으로 대체구입가능여부	7. 시설과장
4. 기자재운용 예산, 관련기술 및 요원의 확보 대책 강구 여부	8. 기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안건 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2인
5. 고장시수리, 대체등에 관한 사 후관리책 완비 여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 를 대표한다.
6. 기자재의 생산국, 규격, 성능 등의 적절 여부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7. 계약방법, 입찰가격 기준등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수요기관 기자재의 활용증대를 위한 관리, 공동사용, 관리전환 등에 관한 종합 조정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주제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 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8-10 제 834 호 시

보 1981. 4. 15

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신의에 앞서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실의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교육기자재 심의 분과위원회, 일반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 교육구청 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산업교육과에서, 일반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재무과에서, 교육구청 기자재 심의분과위원회는 해당 교육구청에서 각각 운영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안전이 있을 때마다 기자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자재 수요기관을 감독하는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에 따라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과장과 교육구청 장이 된다.

제 11 조 (수당) 본청 및 교육구청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교육과의 공업교육계장이 된다.

제 13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8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증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46 호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
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시민복지기탁금관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11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팔호안의 "출장소"를 각 삭제한다.

(2) 제 1 항에 의한 금고의 명칭은 본청은 "서울특별시 개나리 상조금고"라고 하고 각구는 "○○구 개나리 상조금고"라 한다.

제 3 조 제 4 호 및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활근로대통 출우단체

10.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제 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기탁금 취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매년 기탁금 취급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중 "출장소는 총무과장"

제 3 조 제 1 항 중 "출장소", 제 4 조 중 "출장소 총무과", 제 9 조 제 3 항 중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도시계획변경(도로) 결정고시

주택신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 1-1 와 15 월지 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아파트 및 부대시설)하고 동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4.9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천호	북원	연장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1	6.0	143.0	M	길동 55-4	길동산 1-1
폐지	3	1	6.0	143.0		"	"
기정	3	2	6.0	96.0		길동산 1-2	명일동산 69-1
폐지	3	2	6.0	96.0		"	"
기정	3	4	6.0	53.0		길동 55-4	길동 58
폐지	3	4	6.0	53.0		"	"
기정	3	5	6.0	93.0		길동 58	길동산 1-2
폐지	3	5	6.0	93.0		"	"

38-12 제 834 호 시

보 1981.4.15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6	6.0	37.0	길동산 1-2	길동산 1-2
폐지	"	3	6	6.0	37.0	"	"
기정	"	3	7	6.0	186.0	길동산 1-1	명일동산 69-1
폐지	"	3	7	6.0	186.0	"	"
신설	"	3	3	6.0	209.0	길동 54	길동산 1-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7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제 12 호 (80.1.16)로 공람한바 있는 응암지구 일부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 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

2. 고시내용

가. 관리처분계획

토지 및 건축소유자에게 개발통보하여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건축국 재개발 2파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 열람함.

1981.4.1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75호 (80.11.7)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제463호 (79.12.10)의 관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파와 시민봉사실 및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4.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 610- 구로구 시흥동 561 의 2
2) 사업의 종류 및 경칭: 도시계획사업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3) 사업시행규모: 철탑 20기, 연장 3,948m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1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김영준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가. 확공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1주일이내	의 조서 지인 및 치목과 소유권이
나. 준공예정일 : 81.12	외의 권리명세 : 다음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성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다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154KV시흥송전선 첨단)

첨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	지적 적(명)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의 관계인주 소 성명
					주	소	
1	시흥 소하읍왕평리	610	전	311 35	한국전력주식회사		
2	" "	603	"	793 23	영등.영등포 2 가 398	조순단	
3	" "	산 143	임	10,612 34	울산.신정 700-4	이기홍	
4	" " 노은사리	산 2	"	8,597 14	영등.당산 3 가 2	이인형 남양동 씨풀증 (익원 군파)	
5	" " 하안리	산 81	"	7,140 14	양주진전 팔현리		
6	" " "	산 77-1	"	6,149 14	진포화성마곡 634	이의익 이기봉	
				"	석 한 315	이의열	
7	" " "	산 146-2	"	4,860 18	시흥.소하 하안 478	정일준	
8	" " 소하리	산 21	"	2,281 20	용산 한남 774-2	설원량	
9	" " "	산 24	"	4,959 17	" "	"	
10	" " "	산 48-1	"	56,926 32	수원.매산로 3 가 94-37	최종선	
11	" " "	" "	"	"			
12	" " "	298-5	담	1,322 34	시흥 소하 소하 324	김덕천	

38-14 제 834 호

시

보 1981.4.15

월정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	면적 (평)	소 유 자	토지주용법제 4 조제3항의판례 안주노 성명
13	시흥·소하·소하	283-2	답	5,524	18	시흥·소하·소하 392	김태중
14	" " "	423	"	6,651	17	" " " 324	첨종익
15	" " "	471-2	"	4,334	19	영등포 시흥 210	양경석
16	" " "	485	"	1,426	20	관악 대방 389-21	박경운
17	" " "	500	"	3,940	18	시흥소하 소하 165	김주택
18	영등포·시흥	576-1	임	906	55	국 유 지	
19	시흥·소하·소하	7-2	잡	13,850	55	"	
20	영등포·시흥	561-2	대	6,765	38.1	한국전력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9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이정사·도로)

설정(지적승인포함)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이정사·
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지적승인
포함)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79.12.10)의 권한위임 사

한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파와 경기도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4.9

서울특별시장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공용·이정사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하안리 740 일대	58,300 ㎡	지적승인포함

제834호 시

보 1981.4.15 38-15

0. 도로조사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310M	경기도시흥군 소하읍하안리 784	경기도시흥군 소하읍하안리 736	
변경	"	"	"	"	"	"	폐지
기정	"	"	"	200M	" 791	" 775	
변경	"	"	"	"	"	"	폐지

0. 별첨도면 표시와 같이 음(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제 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79. 12. 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와 하천에 대하여는 치수과에 비치 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1.

서울특별시장

0. 도로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149	20m	300m	중로 1-135	성동고북단	
변경	"	"	"	"	3,290	"	마장교(대 로 2-38)	중 2-19 를 흡수노선 연장(지적 승인 포함)

38-16 제 834 호 시 보 1981.4.15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	2	19	15	4,730	하왕십리동 9호광장	청계천남쪽 (대 1-16)	
변경	■	■	■	■	■	■	■	폐지후일부 증 1-149로 흡수 결정
신설	■	3		12	150	한강로 2가 16	한강로 2가 16	

0. 별첨도면표시와 갈음 (도면생략)

0. 하천조서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하천 (홍제천)	65m 84m	11,950m	평창동 65	성산동한강 합류점	
변경	■	35 - 84	■	■	■	유진상가 - 홍연교간 일부조정

0. 별첨도면표시와 갈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1호

시설(도로)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고시한다.

민영주택건설사업자회승인고시
 1. 주택건설 축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서
 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106-1의
 16필지 상에 민영주택(단독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도사계획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축과에 비
 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인정 조서

사업의 종류	사업자	사업예정지	건설규모	내지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민영주택	한미연합사	서울특별시	단독주택	22452 ㎡	1,269,828	8 1,4
건설사업	무주택장병	도봉구	75세대	단지	천원	82,4

제 834호

시

보 1981.4.15 38-17

사업의 종류	사업자	사업예정지	건설규모	대지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제작승인	초합장 정형철	중계동 106-1의 16필지		20982.5㎡ 단지외 도로 1469.5㎡		

나) 도로 변경 조서

구분	동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접	총 접	비 고
기점	소로	2	8	69	중계동 85-3	중계동 94-14	일부위치변경
변경	•	•	•	90	•	•	
기점	소로	2	8	95	중계동 94-1	중계동 105-8	일부위치변경
변경	•	•	•	102	•	•	

다) 토지 세목 조서

위 치	지 목	면 입 면적	소 유 자	비 고
중계동 106-1	전	20982.5㎡	한국연합사	
외 16필지	답		무주택 장병조합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 호 (81.3.26)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
동차 정류장)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

시세회법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호 (79.12.10) 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부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4. 1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적승인 조서

구 分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	구로구 가리봉동 535-4 일대	7,280㎡	

38-18 제 834 호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3 호

도시 계획 시설(도로) 변경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 호 (81.
3.27.)로 시설 변경 결정 고시
된 성동구 판내 옥수동 429번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

보 1981. 4. 15

10)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파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 계획 시설(도로) 변경 지적 승인

구 분	도로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 정	소로 2 류	8 M	40 M	옥수동 429-4	옥수동 430-7	폐지
변 경	소로 3 류	6 M	30 M	"	" 429-3	폭원축소 및 위치변경

나. 변경 결정 도면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

도시 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추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79.11.5)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
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
10)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 (80.10.14)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된 내용중 아래사항을
추가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파와 시흥군 건설과 및 경기

도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4. 13.

서울특별시장

1-6. 사업시행지, 위치 및 계획평
면도: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6
호 (80.10.14)와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시행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시흥군	산 39-1	임야	1,980평	1,013 평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17-8	이민재
소하읍	산 39-2	"	6,150	2,512	철산리 56-234	이종환
철산리	산 30-3	"	6,570	2,859	철산리 산 39 철산리 56-234 광명리 158-58 광명리 273-43 동대문구 재기동 114-23	이산조씨 철 원공용형과 증진회 김정화 김순대 김한구 장인환
	산 39-9	임야	2,400	955	철산리 39-4	조전근
	산 41	묘	2,520	758		시흥군
	224-1	임야	2,904	813	철산리 50-206	김홍달
	221	전	604	125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0	김영선
	222	전	680	13	철산리 467-172	고주봉
	223	전	189	36	철산리 173	홍경우
	224	전	447	447	철산리 175 영등포구 신길동 238-17	여홍민씨 홍파종중 민병일
	225	전	452		도봉구 창동 688-8	민병아
	588	구거		114		국유지
제				9,150평		

제 834호 시 보 1981.4.15 38-19

38-20 제 834 호 시

보 1981.4.15

⑤ 서울특별시고시 제 12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 (79.4.
1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지적승
인 하였기 아울 고시한다.

2. 관제 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관에 각각 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1.4.14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번호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I	20m	155	1,200m	공항동	개화동	중 1-155 종점부근
변경	"	"	"	"	"	"	"	가객정리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⑥ 서울특별시고시 제 126 호

소매상의연쇄화사업대장
규모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소매상의 연쇄점 매
장 규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한다.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중소상인 연쇄점 매장규모	7평이상	5평이상

1981.4.

서울특별시장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21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지적승인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전
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1981.4.15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하수도	0.5m	50m	강서구 등촌동 195	강서구 등촌동 196-9	
		1.0	210	등촌동 191-101	등촌동 185-2	
		1.2	110	등촌동 185-2	등촌동 185-17	
		1.7	115	화곡동 203-6	화곡동 125-10	
		1.2	10	화곡동 125-10	화곡동 125-11	
		1.0	117.5	화곡동 125-11	화곡동 128-4	
		0.5	140	화곡동 362-3	화곡동 112-2	
		0.7	570	화곡동 327-8	화곡동 261-6	
		0.7	160	화곡동 327-50	화곡동 323-15	
		1.2	170	신정동 산 35	신정동 517-6	
		1.4	120	신정동 517-6	신정동 530-2	
		1.7	241	등촌동 112-4	등촌동 419-4	
		1.4	180	등촌동 432-3	등촌동 411-3	
		1.0	400	방화동 611-124	공항동 3-5	
		1.0	71	내발산 507	내발동 503-1	
		2.7	110	목동 404-2	목동 404-2	
		2.7	650	신정동 119-1	신정동 130-88	
		3-4.5	257	신정동 25-2 (지)	신정동 283-2	

38-22 제 834 호 시

보 1981.4.15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8 호

도시계획용도지구 (보존
지구)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 (보
존지구) 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
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2.

10)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경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1981.4.15

서울특별시장

가. 보존지구 지적승인조서

위 치	면적	비고
강서구 방화, 개화, 화곡, 등촌, 신월, 공항 가양, 내발산, 외발산, 마곡동, 부천시 고강동일대	6,550,000坪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②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9 호 (81.4.
7.) 및 제 110 호 (81.4.7) 로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

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
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경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4.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중학교	은평구 불광동 산 112 일대	13,074(3,955평)	
"	"	" 신사동 산 80 일대	8,793(2,660평)	

제 834 호 시

일 1981.4.15 38-23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국민학교	은평구 녹번동 175 일대	10,314 (3,120'')	
"	"	" 신사동산 103일대	11,659 (3,530'')	
"	"	" 신사동산 55일대	9,484 (2,869'')	
"	"	" 대조동산 7-2일대	9,296 (2,812'')	

※ 별첨도면과, 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0 호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7 호 (81.4.6)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
장·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본래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
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1981.4.17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조서

구분	시설명	시장명칭	위치	대지면적	건축계획(세부시설)
신설	소매시장 (농산물·특 용작물전 용)	경동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번기주변 일대	1,530.34평	지하 2층 : 1,377.3 평 지하 1층 : 1,371.3 " " " 지상 1층 : 762.3 평 지상 2층 : 762.3 " " " 지상 3층 : 762.3 " " " 계 : 5,341.5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2	8	45	동대문구 제기동 1015	동대문구 제기동 1018	
변경	중로	2	15	45	"	"	확장
기점	소로	2	8	118	동대문구 제기 1019	동대문·제기 1044	

38-24 제 834 호

시

보 1981.4.15.

구분	등급	류별	북원	연장	기 접	종 접	비고
변경	중로	3	12	118	동대문·제기 1019	동대문·제기 1044	확장
기정	소로	2	8	90	동대문구 제기동 1019	동대문구 제기동 1021	
변경	"	1	10	90	"	"	확장
기정	"	2	8	88	동대문·제기 849	동대문·제기 849	
폐지	"	2	"	"	"	"	

공 고

① 서울특별시 공고제 100 호

서울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건설부고시 제 343호 (79.9.21) 및 제
311호 (80.10.24)로 이수추가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된 이수추가지
구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6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
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1.4.
서울특별시장

- 사업명: 서울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37 일대
- 시행면적: 76,608 평 (23,174 평)

4. 시행자: 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5. 시행기간: 1981.4. (인가일) - 1983
12.31.6.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1210 번지7. 기타: 관계도서는 이수추가지구 토지
구획정리조합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관계도서생략)

② 서울특별시 공고제 101 호

서울강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50호 (80.5.20) 및
제 387호 (80.11.18)로 강동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된 강
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1.4.
서울특별시장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25

1. 사업명 : 서울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각 일부	1981.4.
3. 시행면적 : 363,636평(110,000평)	
4.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5. 시행기간 : 1981.4 (인가일) - 1982. 12.13.	
6. 기타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관계도서는 생략)	<u>공 람 개 요</u>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 (66.2.17)에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20 호 (73.7.16)로 지적고시된 영등포구 시행 신길광장-구대방천간 도로정비공 사구간내에 저축편입되는 토지의 도시 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1. 사업장위치 : 영등포구 신길 5동 시점 : 영등포구 신길 5동 425번 지 앞 종점 : 영등포구 대림 2동 414번 지 앞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알음한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광장- 구 대방천간 도로정비공사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	3. 사업의 규모 : 폭 : 25미터 연장 : 35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5. 학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1981 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다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 성명 : 다음
	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토목과에 문의할 것.

38-26 제 834 호 시

보 1981.4.15

토 지 조 서

공시명 : 신길광장 - 구 대방천간 도로정비공사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신길동	412-21	대	4.0	중로구, 둥인동 7-19	최배산의 1인
"	412-20	"	1.0	"	"
"	414-35	"	10.0	강서구, 동촌동 315-5	허창현
"	414-4	"	17.0	" 199-146	김문학
"	414-33	"	20.0	대방동 223	임수암
"	414-13	답	400	"	임수암
"	438-1	도로	202.0	대방동 222	정유현
"	435-23	대	66.0	여의동장미 APT. A 803, 1-144	신용태
"	435-6	"	43.0	"	신용태
"	435-2	"	37.0	인천·남구주안 1동 196-9	이장재
"	433-74	답	1,123.0	신길동 1669	빈대길
"	433-76	"	476.0	"	빈대길
"	432-5	"	17.0	"	빈대길
"	429-10	"	79.0	"	빈대길
계	14 필		2,495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 (66.6.21) 및 서울특별시 변경고시 제 291 호 (79.6.2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대로 3류 47 호선인 우마로 개설공사 410m간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3 호 (78.12.21)로 시설건기 및 지적승

인된 중류 2류 제 82 호선인 우마로와 연결되는 도로 250 미터 구간내 저축면임 되는 토지 및 전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

-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부하고자 이에 공고함.
- 토지 및 전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할.

제834호 시

보 1981.4.15 38-27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배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개시판
나. 공고기간 : 81.4.11~81.4.25
1981. 4. .

서울특별시장

- 공 람 개 요 -

1. 사업시행지 : 면목동 402번지~
면목동 1084번지
2. 산업의 종류와 명칭 : 우마로(망

우로-어린이대공원 후문간)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 25미터 연장 : 410미터
폭 : 15미터 연장 : 250미터
4.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장 (동대문
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안가일~8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
물 : 다음

7. 사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우마로(면목동 494~536) 보상구간

공사구간총평수		수용평수	비 고
대 30필지	2,710.90㎡	30필지	2,710.90㎡
임야 4 "	1,493	4 "	1,493
도로 1 "	25	1 "	25
건 12 "	2,886	7 "	1,783
추기 5 "	1,612.40		시유지 5/1,103 시유지 2/ 145.40 국유지 13/1,467
계 52 "	8,727.30㎡ (2,639.99평)	42 6,011.90㎡ (3,818.59평)	10/2,715.40㎡
건물 18동	지상 275.38		
	지하 17.22		
	계 292.60평		

토지조사

순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면목동 442-1	면목동 442-1	대	87.6㎡	동대문구면목동 442-1	김영준	
2	" 442-2	" 442-2	"	100.8㎡	" " 442-2	이정기	

38-28 제 834 호 시

보 1981.4.15

순위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유		성명
					주	소	
3	면목동 442-3	면목동 442-3	대	107 ㎡	성북구정농동산 87-1		김순일
4	" 442-4	" 442-9	"	45 ㎡	동대문구면목동 442-4		박춘재
5	" 442-5	" 442-5	"	141.8 ㎡	" " 442-5		조창규
6	" 469-1	" 469-1	"	133.6 ㎡	" " 469-1		최용
7	" 469-7	" 469-7	"	99.2 ㎡	" " 469-7		박용애
8	" 469-6	" 469-6	"	165.3 ㎡	" " 379-20		장영선외1
9	" 469-2	" 469-2	"	83.6 ㎡	종로구신길로 2 가 1-127		김승동
10	" 469-5	" 469-5	"	97.8 ㎡	동대문구면목동 469-5		김효남
11	" 505-4	" 505-22	"	21.5 ㎡	" " 505-4		박용식
12	" 505-5	" 505-5	"	46.3 ㎡	" " 505-5		김기환
13	" 505-6	" 505-6	"	69.8 ㎡	" " 505-6		최역재
14	" 506-11	" 506-11	"	65.1 ㎡	경북예천봉양귀망리 189		이동희
15	" 507-2	" 507-19	"	60 ㎡	동대문구면목동 55-10		서인근
16	" 507-11	" 507-22	"	18 ㎡	" " 507-11		정병업
17	" 507-3	" 507-20	전	364 ㎡	" " 1148		서인근
18	" 507-14	" 507-14	대	131 ㎡	" " 507-14		이봉재
19	" 507-15	" 507-15	"	88 ㎡	" " 507-15		유영근
20	" 507-16	" 507-16	"	83 ㎡	" " 507-16		박병수
21	" 507-18	" 507-18	"	144 ㎡	" " 1148		서인근
22	" 1082-2	" 1082-8	"	138 ㎡	성북구정농동 260-39		최준희
23	" 1082-6	" 1082-10	"	59 ㎡	동대문구청량리동 522		정임홍
24	" 1082-5	" 1082-5	"	102 ㎡	면목동 1082-5		서병국
25	" 1082-4	" 1082-4	"	89 ㎡	성북구정농동 260-39		최준희
26	" 1082-1	" 1082-12	"	151 ㎡	성북구정농동 260-39		"
27	" 523-2	" 523-18	"	27 ㎡	동대문구면목동 523		김승우
28	" 523-3	" 523-19	임야	2 ㎡	" "		"
29	" 1084-12	" 1084-32	도로	25 ㎡	" "		김시완
30	" 1084-13	" 1084-33	전	305 ㎡	" "		"
31	" 523-6	" 523-6	임야	167 ㎡	" "		김승우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29

위 아 이	당초지번	수용지번	지목	수용지적	소 우 자		
					주	소	성 명
1	면목동 〃 523-11	523-11	임야	142	동대문구면목동 523	김증우	
2	〃 524-9	524-9	전	763	" " "	김시완	
3	〃 1086-29	1086-29	"	40	" " "	"	
4	〃 1089-4	1089-4	"	272	" " "	"	
5	〃 1090-10	1090-14	대	127	" " 1090-1	최영진의 1	
6	〃 536-1	536-16	"	55	" " 536-1	이규운	
7	〃 1110-10	1110-10	전	10	" 휘경동 192-	박도현	
8	〃 1082-3	1082-11	대	35	성북구정릉동 260-39	최준희	
9	〃 1086-33	1086-33	전	23	동대문구면목동 523	김시완	
10	〃 523-1	523-1	임야	1182	" " "	김증우	
11	〃 442-6	442-6	대	139.5	" " 442-6	하성윤	
12	〃 459-4	459-8	구거	39	"	서울특별시	
13	〃 469-3	469-3	"	106.4	"	"	
14	〃 1091-1	1091-1	전	258	"	"	
15	〃 1110-12	1110-25	"	19	"	"	
16	〃 1110-2	1110-2	"	545	"	"	
17	〃 1110-24	1110-24	"	175	"	"	
18	〃 1110-23	1110-23	"	106	"	"	
19	〃 1326-2	1326-79	구거	279	"	국	
20	〃 1326-10	1326-82	"	629	"	"	
21	〃 1326-85	1326-86	"	59	"	"	

전 물 조 서

위 아 이	소재지	구조	신축년월일	총평수	수용평수	소 유 자	
						주	소
1	면목동 〃 442-1	세 뱀부리 세 멧와습	68. 3.29	9.83	9.83	동대문구면목동 442-1	김영준
2	〃 442-2	"	68. 4. 2	14.25	14.25	" " 442-2	이정기
3	〃 442-3	"	68. 3.29	9.88	9.88	성북구정릉동 442-3	김순인
4	〃 442-4	여 와 죠 평 우 개	69.11.19	(1) 22.10 (2) 22.10	1층 8.92 2층 8.92	포천군영종 영정리 301	박태화

38-30 제 834 호 시

보 1981.4.15

순위	소재지	구조	신축년월일	총평수	수용면수	소유차	
						주	소
5	442-5	여 와 조 경 육 계	69.11.30	① 20.50평 ② 16	① 20.50평 ② 16	동대문구 면목동 442-5	조창규
6	442-6	"	"	② 19.50 ② 16	35.50	" " 442-6	하성윤
7	469-1	연 와 조 세 멘와집	73.7.21	25.04	25.04	" " 469-1	최 용
8	469-2	"	70.7.20	17.19	17.89	종로구 신문로 2가 1-127	김승준
9	469-5	"	68.11.14	14.50	14.50	동대문구 면목동 469-5	김효남
10	467-7	"	74.6.28	20.54	20.54	" " 469-7	박용예
11	505-4	"	70.9.7	26.89	3.71	" " 505-4	박용식
12	505-5	"	70.11.10	18.37	9.43	" " 505-5	박인순
13	505-6	"	70.9.7	18.03	12.79	" " 505-6	최덕재
14	506-11	"	70.6.30	15.63	15.63	경북 대천군 중앙면 미광리 189	이동희
15	507-14	"	76.7.21	29.01	13.11	동대문구 면목동 507-14	이봉재
16	507-16	"	70.12.6	18.42	16.41	" " 507-15	유영근
17	507-16	"	70.11.30	17.34	17.34	" " 507-16	박명수
18	507-11	"	71.3.18	20.83	2.41	" " 507-11	정병업
지상		275.38	지하	17.22	계	292.60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4 호

환자제회 변경 등록공고

1. 영동 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자에 적지증(아파트지구)
일부 환자에 정기예 내하여 환자제
회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자제
회를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에게 공람 시킨다.

2. 환자제회변경 조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것이
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
고로 갈음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 환자제회변경내역 -
- 가. 사업명: 영동제 1 지구 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7,251 평
 - 다. 변경위치: 강남구 반포동 311-

제 834 호 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5 호

환경계획변경인가 및 환지
예정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6 호 (81.1.16)
로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한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
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 55조와 행정기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
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
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공고로 간주한다.

1981. 4. 10

서울특별시장

4. 품 목

허가번호	허가일자	규격번호	품명	종류·등급
제 185 호	80. 7. 1	KSC 3101	전기용 연동선	전 종류
186	"	" 3102	" 경동선	"
187	"	" 3103	" 연동연선	"
188	"	" 3104	" 경동연선	"
1319	"	" 3111	" 경알루미늄선	"

보 1981. 4. 15 38-31

환지예정지 변경내역

가. 사업명: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면적: 9,040 평
다. 변경위치: 강남구 서초동 106-5
외 43 일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6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허가를 취소처
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
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4. 11

서울특별시장

1. 제조업체명: 금강전선(주)

2.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 가 38

3. 대표자: 오운수

38-32 제 834 호			보	1981. 4. 15
허가번호	허가일자	규격번호	품명	종류·등급
1106	80. 7. 1	KS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전종류
1107	"	"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
464	"	" 3302	600 V 비닐전선	"
465	"	" 3304	기구용 비닐 코오드	"
513	"	" 3306	8자형 육의 전화선	"
512	"	" 3313	육의용 비닐절연전선	"
466	"	" 3315	일일용 비닐절연전선	"

5. 취소사유: 폐업(자진반납)

6. 취소일자: 1981. 4. 11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7 호

열 사용기자재제조업체 행정처분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됨으로

1981. 4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용법조	비고
140	효창공업	홍성업	구로 685	무단휴폐업 (소재지불명) 및 법정보고미제출	허가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23조 제3항 및 5항		
130	대원보일러	김재탁	구로 954	"	"	"	
179	신신풍업사	정기완	독산 612-2	"	"	"	
101	우신열기	이순억	독산 164-5	"	"	"	
158	동광기업사	노창희	가리봉 318-1	"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98 호 (71.4.7)로

시설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 1 호
(74.1.11) 제 92 호 (79.2.28)로
지적 고시된 구로구 독산동-관악
구 서림동간의 군곡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33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관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 · 관제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 자에게는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관악구신림동 1477-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난곡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도로포장 $b = 20m L = 108m$ $A = 158a$ 나. 하수도시설 $D = 600-900mm L = 1303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일자일 - 81.9.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다음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판 인 주소 : 다음
1981.4.13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구로구독산동 103의가	

토지조사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관악구 신림동	산 122-13	임야	312	서대문구홍은동	177-14	조천식	
2	"	산 201-6	"	496	동작구노량진동	117-162	김병만	
3	"	산 202-5	"	587	종로구혜화동	20-21	김명천	

⑤ 서울특별시공고제 109호

부터 14일간 일관인에게 공람시키
고자 이에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3. 관제도서는 구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도시계획사업(구로공단종합
부지관)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19호(81.4.9)
로 표시된 구로공단 종합부지관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1981. 4.

서울특별시장

38-34 제 834 호 시
공 람 개 요

보 1981.4.15

4. 사업시행면적 : 58,300(17,666.7평)
5. 사업기공 및 준공예정일
6. 기공예정 : 81. 5.20
7. 준공예정 : 82. 3.10
8.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다음 (풍용의 청사 : 구로공단종합복지관)
9.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설명 : 다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분할지적 (수용대상)			소유자	소유자이외 의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시흥군소하읍하안리	733	전	225	시유지 (매입)	시유지 (매입)
"	734-1	답	1,570	"	"
"	734-2	"	2,327	"	"
"	734-3	"	1,684	"	"
"	735	전	780	"	"
"	737	"	600	"	"
"	739	"	1,121	"	"
"	740-3	"	288	"	"
"	741	"	1,061	"	"
"	741-1	"	288	"	"
"	742	"	2,489	"	"
"	777	"	195	"	"
"	783-2	답	3,696	"	"
"	783-3	"	1,997	"	"
"	784	"	2,102	"	"
"	785	전	496	"	"
"	786	"	826	"	"
"	787	"	793	"	"
"	788	"	1,421	"	"
"	789-1	"	856	"	"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25

소재지	불활자석 (수용대상)			소유자	소유자이외 의판재인
	지번	지목	지적(㎡)		
시흥군 소하읍 하양리	789-2	전	1,174	시유지(폐인)	시유지(폐인)
	790	·	655	·	·
	산 10-2	임	694	·	·
	산 10-3	·	496	·	·
	732	답	1,677	·	·
	734-4	·	107	·	·
	736-1	전	400	·	·
	738-2	·	522	·	·
	740	·	1,782	·	·
	775	·	180	·	·
	776	답	1,859	·	·
	778-2	전	150	·	·
	779-2	·	207	·	·
	791	·	236	·	·
	793-2	·	530	·	·
	794-2	·	160	·	·
	산 9-3	임	921	·	·
	산 19	·	400	·	·
	736	전	2,014	·	·
	738	·	900	·	·
	738-1	·	853	·	·
	738-3	·	595	·	·
	740-1	·	664	·	·
	740-2	·	425	·	·
	743	·	471	·	·
	744-2	·	100	·	·
	산 9-1	임	9,414	·	·
	산 10-1	·	4,857	·	·
	산 14-3	·	800	·	·

38-36 제 834 호

보 1981.4.15

소재지	분류지식(수용내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관계인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서울군소화율화안리	731-2 783-5 89-2 89-6 53번지	당 당 일 당 53번지	91 66 397 26 58,300 (17,666.7평)	월산리 산 39 월산리 507 노은사리 216 상도동 134-11 월산리 39	직산포씨증진회 장화준 정춘화 윤상일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1 호

KS 표시정지처분 공고

공정표준화법 제21조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정지처분하였기 동일시행규칙 제21조와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1. 4.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제 1447 호

허가일자 1975.5.4

제조업체명 서울화학공업(주)

대표자 허철

규격번호 5317

품명 조합페인트, 백색

종류 및 등급 1종
처분기간 처분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일자 81. 4.
처분사유 규격기준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3 호

건설업(조경식재 및 시설물단종
공사업) 면허취소 공고

건설법 제38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조경식재 및 시설물단종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음을 공고 한다.

1981. 4. 14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가. 취소업체명: 서울
나. 취소일자: 81.4.14

취소업체명단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업종 및 면허번호	
			식재 단종 공사업	시설물 단종 공사업
신구산업사	이종익	종로구청진동 230	서울 21-31	
내지녹화산업	유자열	종로구관철동 18-8 삼영빌딩 501호	21-25	서울 22-18

제 834 호 시

보 1981.4.15 38-37

장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업종 및 면허번호	
			식재단증 공사업	시설물단증 공사업
상 산 조 경	최찬율	중구 다동 93-2	서울 21-36	서울 22-27
상 묘조경건설	백우희	판악구봉천 7동 397서양빌딩 1층	〃 21-41	
아 린 조 경	이관우	강남구 학동 산 16-61	〃 21-28	
미 도 기 업	김택주	마포구 중동 37-3		〃 22-21
한국원예개발(주)	민윤재	성북구 동선동 1가 1-1		〃 22-20
상 일 조 경	박부찬	동대문구 중화동 301-28	〃 21-25	〃 22-19
백립조경기업사	윤대수	용산구 문배동 24-4	〃 21-30	〃 22-22
제 림 원	이재민	강남구 역삼동 451-2	〃 21-19	
상 미 사	조영숙	중구 신당동 217-91 홍인상가 3층 16호	〃 21-22	〃 22-14
홍 암 산 업	이윤경	중구 남대문로 5가 251	〃 21-10	
상 턴 농 원	조호제	중구 회현동 1가 202	〃 21-37	
해 능 농 원	이동규	중구 신당동 106-8	〃 21-15	〃 22-11
영 산 조 경(주)	이한설	중구 봉래동 1가 132-6	〃 21-40	
신 일 농 원	주필수	〃 65-10	〃 21-33	〃 22-24

◎ 1981.4.13

사
령민방위과장 박의중
서기관

◎ 1981.4.10

기획조정실 근무

총무과 정략실
지방통신기사기획조정실 신총식
제5기획조정관실 신총식
서기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민방위국 민방위과장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38-39 XII 834 立

시

1981.4.15

© 1981, 4, 14

© 1981, 4, 18

새마을사업과 이종필 지방행정주사보

동작구신대방2동 노점상 지방행정처기부

위에 의하여 그 책을 떠함.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전술을 명함,

서 물 투 빙 시 장

서 울 뮤 벨 시 장

© 1981, 4, 17

정·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금주	내무국(사회정화추진요원)	동대문구 시민봉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준상	동대문구	강동구 경선관리국장	
강준수	강동구	내무국	
고홍국	예산2담당관 예산관리제작	예산2담당관 예산1제작	
신동우	예산운영제작	예산2제작	
김영수	업무파에 산제장 직대 (지방행정사무관)	노동위원회사무국장	행정사무관
허옥	지하철운영사업소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